탄 원 서

피고인	김흥준	전 육군 소장 ·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
사건	내란중요임무종사 등 / 2026고합486
수신	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7-2부 귀중

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 판사님들께.

1. 김흥준 개인의 공소사실에 관한 요청

공개보도에 따르면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은 정진팔 등과 함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[1] 계엄사의 편성·운용을 지원했다는 기관 차원의 설명과 김흥준 개인의 실제 행동을 혼합하지 말아 주십시오. 군 내부 징계자료는 실질적 단서가 될 수 있으나 형사법원이 확정한 증거사실을 뜻하지 않습니다. [2]

2. 장교 34명 이동과 최초 지시의 귀속

군 징계처분서를 인용한 보도에는 김흥준이 육군본부 장교들의 합참 이동 과정에 관여했고, 박안수의 승인 내용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습니다. [2] 이에 관해 최초 지시자는 누구였는지, 김흥준이 독자적으로 인원을 선정하거나 이동을 승인했는지, 지시 전달과 실행 지휘 사이에 어느 정도 재량이 있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. 실제 이동한 장교 34명의 각 임무와 명령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 편성 관여를 곧바로 특정 범죄의 실행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. 반대로 지휘·조정 역할을 실제 수행한 원문 기록이 있다면 그 내용 역시 판단에 포함해야 합니다.

3. 지휘부 회의 참석과 후속 수방사 병력 확인

같은 보도는 계엄 지휘부 회의에서 추가 병력 투입이나 테이저건 사용 등이 논의됐고, 국회 해제요구 의결 뒤 수방사 가용병력 확인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. [2] 그러나 회의 참석, 제안에 대한 찬성, 실제 명령의 발신, 실행 통제는 각각 증명 대상이 다릅니다. 국회 의결 시각은 12월 4일 01시 02분경으로 확인되지만 피고인이 이를 인식한 시점은 따로 밝혀야 합니다. [7] 시간대별 회의록·통화 기록·병력 이동상황을 하나의 표로 검증해 주십시오.

4. 현장검증 결과의 적정한 범위

2026년 9월 합참 지휘통제실 현장검증과 그 결과에 대한 법정 설명이 보도됐습니다. [6] 시설과 화면의 위치는 어떤 정보를 접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정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화면이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정보를 실제 인식했다고 추정하거나, 다른 공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보고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. 현장검증조서와 통신·회의 자료, 증인신문 원문을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.

5. 형법 제87조 적용과 책임의 개별화

형법 제87조·제91조에 비추어 장교 이동·회의 관여·병력 확인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연결되는 중요임무였는지 각각 판단해 주십시오. [3] [4] 징계상 의무 위반이 곧바로 형사상 중요임무종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준비 단계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일률적으로 제외할 수도 없습니다. 헌법 제77조 제5항 및 당시 계엄법 제11조에 관한 객관적 법적 상황과 피고인의 당시 인식도 구분해야 합니다. [8] [9] 책임이 인정된다면 원지시와 독자적 재량의 차이, 실행 효과 및 후속 결과를 형법 제51조에 따라 반영해 주십시오. [5]

6. 결어

이 탄원은 김흥준 전 정책실장에게 불리한 군 내부 자료를 배척해 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. 그 자료가 무엇을 실제로 증명하는지, 각 행동이 어떤 원시 기록으로 확인되는지, 다른 사람의 명령과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세심하게 검토해 달라는 부탁입니다. 합리적인 의심이 남는 공소사실에는 무죄의 원칙을 적용하고, 증명된 책임은 개인의 구체적 역할에 비례하게 판단해 주십시오.

탄원인: _____ (서명 또는 인)

주소: _____

연락처: _____

김흥준 | 참고자료 및 제출 전 확인

1. 실제 본문에 인용한 공개자료

[1] 뉴스1 2026.8.30. 김명수·정진팔·김흥준 등 첫 공판 예정 보도

[2] 뉴스타파 2026.5.30. 고위 장교 징계처분서 인용 보도

[3] 형법 제87조: 내란

[4] 형법 제91조: 국헌문란의 정의

[5] 형법 제51조: 양형의 조건

[6] MBC, 2026.9.15. 재판부가 9.1. 합참 전투통제실 현장검증 결과를 법정에서 설명한 보도

[7] 헌법재판소 2025.4.4. 2024헌나8 결정례: 국회 해제요구안 01:02경 가결

[8] 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5항: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

[9] 계엄법 제11조: 계엄 해제 절차

2. 사건기록과 직접 대조할 항목

- 장교 34명 이동과 최초 승인·전달의 구분
- 계엄 지휘부 회의의 직접 발언 및 회의 후속 조치
- 수방사 병력확인 지시 원문·해제의결 인식 시점